□ 動力資源部告示(第83－5号)

石油事業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石油事業法(이하 「法」이라한다) 第17条의 3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 및 法 第17條의 4 第3号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塡基準을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令」이라 한다) 第9條의 3 第9條의 4 第9條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3年 2月 21日

動力資源部長官

1. 石油事業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
   가. 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輸入石油 1배럴当 美합중국통화 1.25$(비축기금1.1$, 안정기금0.15$)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다만, 벙커C油 및 프로판·부탄수입시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1) 벙커C油 : 1배럴当 5$(비축기금 1.5$, 안정기금 3.5$)
      (2) 프로판·부탄
         가) 長期低価輸入分
            1메트릭톤当 186$(비축기금 86$, 안정기금 100$)
         나) 現物市場高価輸入分
            1메트릭톤当 186$(비축기금 86$, 안정기금 100$)에 現物市場고가수입 CIF가격과 장기저가수입 CIF가격과의 차이의 60%를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추가하되,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分에 대하여는 186$만 징수
   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石油類製品 가격고시대상이 아닌 油種으로서 가공하여 일반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특수석유제품(서울火力用 유황함량 0.3% 이하인 저유황 벙커C油, 아스팔트에멀죤, 아스팔트콤파운드, 하이솔벤트, 애비가스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令 제9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原油 및 石油製品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
   가. 原油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도입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
      (1) 추가운송비의 지급기준
         가) 原油에 대하여는 석유정제업자가 해당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当 운송비와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当 운송비와의 차이를 令 제9조의 5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매분기별로 산출보전하되 年末에 정산한다.

○손실보전기준 : $\left\{\frac{\text{다변화운임} \times \text{실지급일의 換率}}{\text{다변화도입물량}}\right.$

中東운임×실지급일의 換率 / 中東지역도입물량 ×1.0274×다변화 도입물량

나)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송비를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당해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적용한다.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 산출기준 : 최근년도의 실적치 × (보전대상년도의 World Scale × 평균운임요율(AFRA)) / (최근년도의평균 World Scale × 평균운임요율(AFRA))

(2) 추가금융비의 지급기준

가)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석유정제업자가 해당지역으로부터의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과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의 차이에 따른 추가부담을 令 제9조의 5 제2항 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매분기별로 산출보전하되 年末에 정산한다.

○ 손실보전기준 : 유전스실지급이자 × (다변화원유도착기간 − 중동원유도착기간 / 당해원유의 유전스사용일(이자발생일기준))

나)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융비를 보전하고자할 경우의 中東지역으로부터의 도착기간은 당해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를 적용한다.

(3)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

原油導入先多辺化를 촉진하기 위한 수입장려금은 導入先多辺化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 1배럴当 0.7$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의 換率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安定基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0.15$/배럴)의 징수를 면제하고 잔여 0.55$은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4) 原油도입선다변화 지원대상

이 告示에서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 지역이라함은 美洲및 아프리카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입장려금은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정부, 국내석유 정제업자 또는 민간상사가 産油国정부 또는 産油国의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나. 石油製品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

令 제9조의 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製品의 輸入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의 기준은 수입석유제품 1배럴当 석유제품의 수입가격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선적일로부터 30일되는 날의 換率에서 국내석유제품의 稅前공장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1. 이 告示는 1983년 2월6일이후 통관되는 石油分부터 적용한다.
2. 이 告示 시행이전에 통관된 石油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3. 동력자원부고시 제82−33호(82. 8. 7)및 제83−3호(83. 1. 28)는 이 告示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너와나의 식량절약 이룩되는 식량자급